## 이달의초점

# 위기 취약 청년의 현황과 정책 과제

고립·은둔 청년 현황과 지원방안

## 김성아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현황과 개선방안

## |김지선|

가족돌봄 청(소)년 현황과 정책 과제

### |함선유|

청소년부모 현황과 정책 과제

## 이상정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 및 자립 준비 실태와 정책적 욕구

### |변수정|







## 청소년부모 현황과 정책 과제<sup>1)</sup>

The Current State of Adolescent Parents and Its Implications for Policy

이상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청소년부모는 학업과 취업, 자녀의 임신·출산과 양육이라는 과업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청년으로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초기 청년기에 속한다. 그러나 청소년부모 가구는 그동안 주류 정책 대상으로 주목받지 못한 채 주로 조손가족이나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제한적 지원을 받아 왔다. 한 편 2021년 3월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개정으로 청소년부모 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가운데, 이 글에서는 청소년부모의 특성과 현황, 정책 지원 현황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청소년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개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1 들어가며

2021년 3월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개정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연령이 '모두' 24세 이하 인 청소년부모 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청소년부모는 아동기와 청년기의 중간 단계에 있는 '자립'이라는 발달 과업을 이루어 가는 초기 청년이다. 일반 청년이 학업과 취업을 성취한 후 결혼과 출산,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라는 단계적 인 과정을 통해 자립을 이루는 것에 반해 청소년부 모는 학업과 취업, 자녀의 임신·출산과 양육이라는 과업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청년으로서 사회경제 적으로 취약한 정책 대상이다. 청소년부모가 주로 속하는 19~24세의 초기 청년은 후기 청년에 비해 사회경제적, 심리·정서적으로 취약성을 나타내는 청 년 정책 대상이며(변급선, 유민상, 한경훈, 2022,

<sup>1)</sup> 이 글은 이상정, 류정희, 변수정, 하태정. (2022). 청소년부모 정책 소외 실태 및 정책 개발 보고서(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에 기초하여 작성하였다.

재인용), 일부 청소년부모는 스스로가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정책 대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청소년부모 가구는 그동안 주류 정책 대상으로 주목받지 못한 채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등과 같이 주로 조손가족이나 한부모가족 대상 사업을 통해 제한적으로 지원을 받아 왔다. 사회경제 구조의 변화로 인해 최근 우리나라 청년의 삶이 어려워지면서 청년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청년은 우리 사회의 공식적인 정책 대상으로 본격 편입되었고,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의 5대 영역에서 일반 청년은 물론 자립준비청년, 청년 장애인, 빈곤청년, 위기청년, 청소년한부모 등청년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중점과제를 제시하고 있지만, 청소년한부모가 아닌 청소년부모는 청년 정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청소년(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 방안'(관계부처합동, 2021년 11월)을 통해 청소년 부모의 자립과 자녀의 임신·출산·양육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청소년부모 지원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관심을 모으기 시작하였지만, 자립준비청년, 청소 년한부모 등의 취약 청년에 비해 지원 정책과 서비 스가 매우 미흡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자녀를 양육하는 청년'으로서 청소년부모의 자립 실태 및 지원 욕구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청소년부모 가 자립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연속적이고 통합 적인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살펴 보고자 한다.

## 2 청소년부모 현황 및 특성

## 가. 청소년부모 현황

청소년부모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통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sup>2)</sup> 자료 중 출생신고가 된 출생자와 그 부모의 연령 정보가 담긴 출생연간 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부모의 규모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인구동향조사는 혼인 외출생자를 포함하고 있어 부모의 결혼 연도와 연령을 토대로 사실혼 또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한 청소년부모 가구를 포함할 수 있다.<sup>3)</sup>

2020년 기준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는 2298가구이다. 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가구는 7361가구로 청소년부모 정의에 해당되는 2298가구를 제외하면 5063가구는 청소년 보고로 구성된 가구이다. 이들은 전체 청년가구(11만 1076가구)의 4.5%에 해당한다. 부 또

<sup>2)</sup> 인구동향조사는 신고인이 출생·사망·혼인·이혼 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읍·면·동 또는 시·구)에 제출한 자료와 4종의 신고 이외에 지자체에서 기아발견조서, 실종신고, 혼인취소신고 내용을 포함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통계 자료임(통계청, 2020. 12.). 현재 인구 동향조사 원자료는 통계청의 MDIS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공공용 데이터로 출생, 혼인, 이혼, 사망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sup>3)</sup> 혼인외자 중 결혼 연도(출생신고 서류에 기재하는 결혼 연도는 혼인신고 날짜를 기재하는 것은 아님) 또는 부모의 연령 정보가 모두 있는 경우 사실혼 출생 자녀로 추측할 수 있다.

#### [표 1] 청소년부모 가구 현황(2020년 기준)

(단위: 가구)

부모 모두 19세 미만인 가구	부 또는 모가 19세 미만인 가구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가구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가구	부모 모두 34세 이하인 가구
38	126	2,298	7,361	111,076

주: 음영 표시된 셀은 「청소년복지지원법」제2조(정의)에 따른 청소년부모 가구임. 자료: 청소년부모 정책 소외 실태 및 정책 개발(이상정 외., 2022) 원자료: 통계청. (2020). 인구동향조사 출생연간자료 A형 원자료 분석.

는 모의 연령이 청소년 혹은 초기 청년 연령으로 성인기 안착을 위한 자립 지원이 필요하지만, 부모 모두가 24세 이하여만 하는 청소년부모 법적 정의에 해당되지 않아 소득·재산, 개별 가구 상황 등을 전혀고려하지 않은 채 청소년부모 지원에서 배제된다.

청소년부모 가구의 92.9%는 부모가 모두 19세이상~ 24세이하의 초기 청년 가구이다. 한편 민법 제4조와 제808조에 따라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없으면 결혼할 수 없는 부 또는 모가 만 19세미만 미성년자인 가구는 청소년부모 가구 중 약7.1%(126가구)를 차지한다.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자녀를 낳은 가구는 부모 자신도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복지법상의 아동<sup>4)</sup>에 해당기도 한다.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자립을 해야 하는 고위기의 정책 지원 대상자라 볼 수 있다. 한 편 분석 자료의 특성상 임신 중이거나 자녀 출생신 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위기의 정책 지원 대상자 규모는 통계 추정치보 다 더 많을 수 있다.

#### 나. 청소년부모의 특성

#### 1) 청소년부모의 연령

청소년부모의 연령대는 「청년기본법」제3조에

<sup>4)</sup> 민법상 성년의 정의(제4조), 혼인적령(제807조)과 미성년자와 같이 동의가 필요한 혼인에 관한 사항(제808조)은 아래와 같다.

<sup>-</sup>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sup>-</sup> 만법 제807조(혼인적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sup>-</sup> 민법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서 정의한 청년의 연령대(19세 이상 34세 이하)와 도 중첩된다. 생애주기상 성인기에 이루어지는 경 제적 독립이나 주거지의 독립, 원가족 이외의 새로 운 가족을 꾸리는 등의 사회적인 행위들이 주로 20 대에 이루어졌던 1980년대에 비해(김은정, 2011; 이정봉, 2021) 그 사회적 행위가 발생하는 연령대 가 지연된 현시대를 고려하면 현재 법령상 청년으 로 정의하는 연령대에 속하는 이들 역시 여전히 성 인으로 향하는 과정에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특히 18세부터 24세의 연령대는 아동·청소년에서 성인 으로 전환하는 '초기 청년기'로서 삶의 질 격차가 본격화되는 시기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변금선, 유 민상, 한경훈, 2022). 초기 청년기에 속하는 청년 들 다수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생애사건은 대학 진학과 졸업, 군복무, 첫 취업 등인데, 이러한 생애 사건에 더해 성별이나 가족 배경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초기 청년의 이행 상태(state)는 비구직 미취 업자, 군인, 학생, 노동자, 구직자 등 다양하게 분화 할 수 있고, 이는 삶의 질 격차로 연결될 수 있기 때 문이다(변금선 외, 2022).

2020년 기준으로 초기 청년은 후기 청년(25~34세)에 비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비율이 더 높고, 취업자 비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9년 8월 기준으로 연령별 경제활동 상태를 살펴본 김기태 외(2022)의 연구에서는 전체 연령대의 실업률이 약 3%인 반면 15~29세 연령대는 적게는 6.6%에서 많게는 8.2%의 실업률을 보였다. 성인으로서의 사회적 행위라 볼 수 있는 경제적 독립 자

체도 초기 청년에게는 쉽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노동시장 참여 자체가 불안정한 청년층은 사회 진출기간이 짧아 충분한 자산을 획득하기도 어려우며,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해 다른 경제활동 연령층에 비해 건강, 주거, 문화 등 여러 영역에서 어려움을겪을 수밖에 없다(김태완 외, 2019; 이주미, 김태완, 2022). 초기 청년의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면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부담까지 안고있는 청소년부모는 같은 연령대의 청년에 비해 더열악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자명한사실이다.

#### 2)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기존 연구들에서 청소년기의 임신과 출산에 대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성인에 비해 산전 및 산후 관리에 소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제협력개 발기구(OECD)와 세계보건기구(WHO)(2018: 92; 이재희 조미라, 최은경, 2021: 20)에 따르면 산모의 적절한 산전 관리와 의료시설에서의 출산, 숙련된 의료 전문가의 분만 개조, 산후 관리 등은 산모의 출산 후 합병증과 감염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산모와 신생아 모두의 건강에 중요하다. 특히 산모의 산전 및 산후 관리는 임신 사실에 대한 인지로부터 출발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기에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경우는 임신을 인지하는 시기가 늦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변수정 외, 2019; 은주희, 임고운, 2020; 이선희, 김수지, 서해인, 2021; 이영호, 박지윤, 2021; 이



재희, 조미라, 최은경, 2021). 따라서 청소년부모는 일반 성인 부모보다 산전 및 산후 관리가 취약할수 있으며 결국 모성건강 차원에서 어려움을 겪을수 있다.

또한 청소년부모는 출산과 함께 자녀를 양육하 면서 주어진 부모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도 어 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청소년기에 출산을 경험한 기혼모나 미혼모를 대상으로 부모 역할에 대해 질적 연구를 수행한 기존 연구들(송지나, 강혜 현, 조윤희, 이순형, 2014; 이선희, 김수지, 서해 인, 2021)에서는 일반적인 양육자들은 기존의 인 맥이나 산후조리원 모임 등을 통해 자녀 양육에 관 한 정보를 교환하거나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자녀 양육을 위한 사회적 지지 체계까지 형성하는 반면 청소년기에 출산을 경험하는 경우 또래 중에 같은 상황에 놓인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출산 과정뿐 만 아니라 출산 후에도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발 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부모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 자녀 양육 기술에 관한 정보를 얻거나 습득하는 것 자체가 수월하지 않다고 지적 하다.

## 3 청소년부모 지원 정책 현황과 문제점

#### 가, 동일 대상, 지원의 격차

청소년부 또는 모, 청년 부 또는 모는 이른 시기에 자녀의 출산과 양육, 돌봄을 수행함과 동시에 성

인으로서 스스로의 자립을 위한 학업, 취업과 같은 발달 과업을 이루어야 하는 복합적인 문제와 욕구를 가진 정책 대상이다(류정희 외, 2022). 특히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거나 소득수준이 낮을 경우부모뿐만 아니라 그 영향이 아동에게도 미칠 수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청년 또는 청소년부, 모에게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을 통해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여성가족부, 2022. 2. 18.), 지원 금액은 부모의 소득과 연령, 아동의 연령을 구분하여 세분화되어 있다(류정희 외, 2022).

기본적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의 한부모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이다. 부모 의 연령이 청년(만 25~34세 이하)에 해당할 경우 자녀가 만 5세 이하이면 월 10만 원을 추가하여 30 만 원이 제공된다. 자녀가 만 6세 이상일 경우에는 월 5만 원이 추가되어 총 25만 원을 정부로부터 지 원받을 수 있다.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 로 청소년에 해당하면 가구소득 기준은 65% 이하, 지급액도 35만 원으로 기준이 조정·적용되고, 학 업·취업 등 자립 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 원의 자립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어 총 45만 원의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3). 청소 년부모 가구의 부모는 자립촉진수당이 없으며. 청 소년 한부모와 다른 소득 기준을 적용받고 금액도 15만 원이나 차이가 난다. 한편 이마저도 저소득 청년과 청소년 한부모는 지원받을 수 있지만, 저소

[표 2] 아동양육비지원사업

구분		근거법	부모 연령	가구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아동 연령	아동 양육비	추가 금액	총 지원금액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체크	한부모 . 가족 지원법	만 25~34세	60% 이하	만 5세 이하	20만 원	10만 원	30만 원
	청년 한부모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5만 원	25만 원
	청소년 한부모		만 24세 이하	65% 이하	만 18세 미만	35만 원	10만 원 *취업·학업 등 자립활동시	45만 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청소년 부모	청소년 복지 지원법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 *사실혼 인정	60% 이하	만 18세 미만	20만 원	-	20만 원

자료: 여성가족부.(2023). 2023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에서 2023. 4. 21. 인출

득 청년·청소년 부모(부부)에게는 양육비 지원이 없었다.

## 나. 지원체계 부재

2022년 7월 도입된 아동양육비지원사업을 제외하고, 청소년부모특화사업은 가족역량강화사업이 거의 유일하다. 청소년부모 지원체계가 부재한가운데, 2021년 '청소년(한)부모 자립환경 조성과자녀양육 지원 강화'(관계부처 합동, 2021)에서약속한 바대로 전국 93곳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가족센터를 기반으로 가족역량강화사업 또한 청소년부모 대상 신규 사업으로 수행되고 있지만, 해당사업들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제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제공 시간, 횟수, 기간 제한이 있다. 무엇보다 건강

가정지원센터 종사자의 청소년부모 사례에 대한 전문성 부족, 대상자 발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청소년부모가 이용하고 있는 사례는 매우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 관련 현금성 지원은 강화되고 있지만 임신·출산, 자녀 양육 과정의심리·정서, 사회적 관계 및 자립 지원 관련 서비스가 부재하여 현재의 지원만으로는 청소년부모스스로의 성장과 자립의 효과성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배보은, 2022). 더욱이 부처별, 사업별로 서비스 제공 주체가 다르고, 공공 또는 민간 영역에서 산발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신청주의 기반의 현재 서비스는 청소년부모에게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류정희외, 2022).



## 4 청소년부모5) 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

## 가. '자녀를 양육하는 초기 청년'으로서 정의 및 지원

청소년부모는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의 부모 역 할을 수행하며 이미 '자립'을 이루어 가고 있는 초 기 청년이다. 소득, 직업 불안정으로 인한 경제적 지원, 자녀와 부부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 거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또한 일반 가구의 산모들처럼 출산 후 심리·정서적 불안과 우울, 자녀 돌봄과 양육에 대한 걱정 등을 나타냈으며, 스스로 의 직업, 교육 등에 대한 욕구보다 어린 자녀에 대 한 돌봄과 양육에 대한 우선 지원을 필요로 했다. 즉 청소년부모는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위기 청소년으로서의 특성보다는 '자녀를 양육하는 초기 청년'으로서의 특징을 더 많이 보였으며, 관련 지원 에 대한 욕구를 더욱 나타냈다. 청소년부모 스스로 도 그들을 '청소년'부모로 인식하지 않았으며, '청 소년'부모로 지칭하여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유발 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냈다. 실질적으로 2020년 기준 청소년부모 2298가구 중에서 초기 청년에 해당하는 연령이 대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으로 명명함으로써 부정적 인식과 낙인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청소년부모를 '자녀를 양육하는 초기 청년'으로

청년 정책 영역에서 포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아니라 청년 지원을 위한 근거법으로 법적 기반을 재정비하여야 한다. 청년 연령에 근거한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청소년한부모, 청년한부모, 청년 청소년부모, 청년부모, 청년부모, 청년부모, 청년부모, 청년부모 가구 모두에게 사각지대와 차별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가운데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18세 이하의 청소년 부 또는 모에 대해서는 세부 규정을 통해 추가적인 특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로서 행정적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여 혼인신고, 전입신고 등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주소지 기반의 사회서비스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고, 후기 청소년으로서의 발달과 자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 나. 취약 청년으로서 청소년부모 우선 지원과 지원체계 구축

청소년부모가 초기 청년으로서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대상 서비스는 다양하다. 그러나 대부분 1인 가구 중심으로 청소년부모는 자격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청소년부모가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주거 지원으로 보증금, 전세자금 등이 없어 부모 가구에 편입하여 살고 있는데 부모의 소득이나 자산이 청소년부모가 정부 지원 주택을 지원받지

<sup>5)</sup> 연구 대상 및 방법 관련 조사 개요와 구체적인 통계 분석 결과는 이상정 외(2022)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주택 공급 정책 내 청소 년부모를 우선 특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소득 기준 완화 및 부모 가구와 자산 조사 분리 등의 제도 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 고용·취업 컨 설팅, 청년 교육비 지원, 저금리 대출 서비스 등 청 소년부모를 특별 지원 대상으로서 우선 지원할 필 요가 있다.

한편 신청주의 기반의 이러한 서비스들에 대해 공식적 지원체계가 없는 많은 청소년부모들은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다. 온라인 자조모임이나 민간단체를 통해 일부 청소년부모들만이 제한된 정보를획득하고 있다. 청소년부모가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대상 서비스에 관한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자녀의 임신·출산, 양육과 교육, 청소년부모 당사자의 자립 지원을 위해 위기 상황에 있는 청소년부모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체계는 보건소,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원단과의 연계·협업이 용이하도록 시·군·구 단위에서 제공하고, 일반 청년 대상 지원 정보제공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의 청년센터에서는 청소년부모를 포함하여 모든 청년 대상 지원 정보를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청소년부모를 임신·출산 기간 중 조기 발굴, 지원하여 청소년부모와 아동의 건강, 경제 등의위기 예방이 필요한데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2020년 7월부터 시행하여 2021년 4월 기준전국 30개 지역 보건소로 확대하였다(보건복지부, 2021). 청소년부모를 이 사업의 우선 대상자로 선정, 지원하여 종합적인 정보 제공과 체계적이고 통

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아동이 24개월이 될 때까지 청소년부모 가구에 방문 간호, 복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 필요 시 시·군·구의 취약 아동·가구 통합사례관리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 다. 청소년부모 지원 서비스 개선

#### 1) 주거. 경제지원 제도

일반 청년부모에 비해 주거와 경제적 상황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반 청년부모에 비해 원가족의 지원을 받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주거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주거비를 마련하지 못해 부모 또는 다른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비율이 20% 정도로 나타났는데, 부모의 소득과 자산이 가구소득에 포함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정부 지원주택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로 인해생계비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청소년부모는 특수 정책 대상으로서 별도의 주 거 지원을 원했다. 경제적으로 별도의 가구 구성이 어렵기 때문에 원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는 실정이 다. 따라서 분리된 가구로 인정하여 자산조사를 별 도로 진행해야 한다. 또한 목돈의 보증금 납부에 대한 대안, 소득기준 현실화 등이 필요하다.



## 2) 교육, 훈련, 취업지원 제도

청소년부모는 일반 청년에 비해 고용의 질과 안 정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학력 수 준도 고졸 이하 비율이 대학 이상보다 매우 높았다. 자립을 위해서는 전문대 또는 4년제 대학 졸업 이 상의 학력이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정규 학교와 원격교육기관을 통한 교육에 대 한 욕구도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학업을 중단한 이유도 아동 돌봄의 문제가 가장 컸으며, 자 립을 위해 학업이나 일을 하는 동안 자녀를 돌봐 주 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였다. 관련하여 근무 시간 조 정이나 시간제 근무가 가능한 일자리도 필요로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부모를 위한 교육, 훈련 지원을 위해서는 아동 돌봄 문제를 최우선적 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부모가 교육, 훈련을 받는 동안 돌봄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프 로그램 등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가족부의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에서는 배움지도사를 파견 하여 학습 계획과 지도, 정서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청소년부모 대상 원격 강의나 수업 또한 학 습 지원 방법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 3) 보육, 돌봄지원 제도

청소년부모가 자신의 자립을 위해 교육, 취업훈 련 등을 지속 또는 시도하여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 득을 얻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육, 돌봄 지원이 우선적으로 뒷밤침되어야 한다. 그러 나 현재「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9조(보육의 우선 제공)에 의한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은 아동 복지시설 생활 영유아, 맞벌이 가구, 임산부의 자녀 인 영유아,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이며 소득(수급·차상위), 한부모가족, 장애인 가족, 다문화가족 등이 우선 제공 대상에 대한 적용 기준이 된다. 즉 청소년부모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임신·출산 등으로 인해 중단된 교육과 취업은 자녀가 어린이집에 갈 수 있을 때까지 연기되는 것이 다반사이다. 이마저도 맞벌이 부부, 다자녀가구 등에 후순위로 밀리면서 필요한 시기에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교육과 취업훈련 등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청소년부모가 초기 청년으로서 스스로의 경제적·사회적 자립을 이루어야 청소년부모 가구가 빈곤·취약 가구로 이행되는 것을 예방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부모 가구를 어린이집 우선 대상자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 5 나가며

청소년부모는 스스로의 '자립'과 자녀의 임신·출산과 양육이라는 과업을 동시에 수행하며 예기치 못한 여러 문제와 어려움을 경험한다. 특히 사회경 제적으로 자원이 부족할 경우 그 어려움은 더욱 커 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2021년 3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 이전까지 청소년부모 가구는 그동안 주류 정책 대상으로 주목받지 못한 채 가족역량강 화지원사업,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등과 같이 주로 조손가족이나 한부모가족 대상의 사업을 통해 제한 적으로 지원을 받아 왔다.

2021년 3월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개정으로 청소년부모 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 련되면서 청소년부모도 아동 양육·교육 서비스, 가 족관계 증진 서비스 등의 가족 지원, 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 그리고 청소년부 모와 자녀에 대한 생활, 의료, 주거, 활동 영역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청소년(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방안'(관계 부처합동, 2021년 11월)의 범부처 대책 발표, 청 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 사업 등을 통해 청 소년부모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 글에서 제시한 청소년부모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청년 정책 개선 방향과 과제의 정책 반영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 립과 아동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 한다. 圖

##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 (2021. 11.). **청소년(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방안**.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 &bbtSn=708217에서 2022. 4. 14. 인출.
- 김기태, 정세정, 김현경, 강예은, 최권호, 최한수 ... 김윤 민. (2020).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 가 체제 개발-청년 불안정 노동자 연구. 세종: 한 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은정 (2011). 새로운 생애 발달 단계로서의 성인모색 지(Emerging Adulthood): 20대 전반 여대생을 중심으로. **사회와이론**, 19(2), 133-149.
- 김태완, 김기태, 정세정, 이주미, 최준영, 강예은, ... 송치호. (2019).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 가체제 개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류정희, 이상정, 김지연, 정익준, 정소희, 주하나. (2022).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세종: 교육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민법, 법률 제 1250호 (2023). https://www.law.go. kr/lsInfoP.do?lsiSeq=58435#0000에서 2023. 5. 4. 인출.
- 배보은. (2022). **청소년부모 정책소외 실태와 개선방안.** 서울: 청소년부모지원 킹메이커.
- 변금선, 유민상, 한경훈. (2022). 지표를 통해 본 우리나라 차조기 청년의 삶의 질. 제44회 청소년정책포럼 '지표를 통해 본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현황 및 과제-코로나 시기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변화와 대응' 자료집.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변수정, 김유경, 최인선, 김지연, 최수정, 김희주 (2019).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특성과 정책과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 (2021). 보도자료. https://www.mohw. 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 \_ID=04&MENU\_ID=0403&page=1&CONT\_ SEO=364939에서 2023. 4. 5. 인출.
- 송지나, 강혜현, 조윤희, 이순형 (2014). 십대출산기혼모의 부모됨에 관한 질적연구: 지지적 관계를 통한적응과 성숙을 중심으로. **동광**, 109, 75-122.
- 아동복지법, 법률 제 17784호. (2023).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5%84%EB%8F%99%EB%B3%B5%EC%A7%80%EB%B2%95에서 2023. 5. 4. 인출.



- 여성가족부 (2022.2.18.). 한부모가족을 위한 든든한 정책4가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https: //www.korea.kr/news/visualNewsView. do?newsld=148899094에서 2022. 7. 27. 인출.
- 여성가족부.(2023). 2023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http://www.mogef.go.kr/nw/enw/nw\_enw \_s001d.do?mid=mda700에서 2023. 4. 21. 인출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895호 (2022). https://www.law.go.kr/%EB%B2%95%EB %A0%B9/%EC%98%81%EC%9C%A0%E C%95%84%EB%B3%B4%EC%9C%A1%E B%B2%95%EC%8B%9C%ED%96%89%E A%B7%9C%EC%B9%99에서 2022. 8. 22. 인출.
- 은주희, 임고운 (2020). 청소년미혼모가 경험하는 사회 적 무시와 인정: 자아정체성 형성을 위한 교육적 함의를 중심으로. 교육연구논총, 41(2), 131-159.
- 이선희, 김수지, 서해인 (2021). 청소년 미혼모의 부모 역할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6(2), 1-23.
- 이영호, 박지윤 (2021). 청소년부모의 지원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10대에 자녀를 첫 자녀를 임신한 미혼한부모를 대상으로.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5(1), 113-132.
- 이상정, 류정희, 변수정, 하태정. (2022). 청소년부모 정 책 소외 실태 및 정책 개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재희, 조미라, 최은경 (2021).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 원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이정봉 (2021). 이행기 관점 청년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 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21(8), 1-21.

- 이주미, 김태완. (2022). 청년층 불평등 현황과 과제: 노 동시장, 소득 및 자산을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3(305), pp. 8-20.
- 청년기본법, 법률 제184433호 (2021).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2%AD%EB%85%84%EA%B8%B0%EB%B3%B8%EB%B2%95에서 2022. 5. 10. 인출.
- 청소년기본법, 법률 제17285호 (2020).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2%AD%EC%86%8C%EB%85%84%EA%B8%B0%EB%B3%B8%EB%B2%95에서 2022. 4. 14. 인출.
- 청소년복지지원법, 법률 제18550호 (2021). https://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B2%AD%EC%86%8C%EB%85%84%EB%B3%B5%EC%A7%80%EC%A7%80%EC%9B%90%EB%B2%95#liBgcolor1에서 2022. 4. 15. 인출.
- 통계청. (2020). 인구동향조사 출생연간자료 A형
- OECD, WHO (2018). Health at a Glance: Asia/ Pacific 2018: Measuring Progress towards Universal Health Coverage.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health\_glan ce\_ap-2018-en.

# The Current State of Adolescent Parents and Its Implications for Policy

Lee, Sang Jung

(Korea Social Security Information Service)

Adolescent parents are young people in their early youth—a socioeconomically vulnerable phase—who have to juggle school, work, pregnancy, childbirth, and parenting. Adolescent parent families, however, have not been looked upon as a policy target group in their own right, with the support given to them provided in limited ways via such support programs as those intended for grandparent families and single—parent families. As a legal basis on which to provide support for adolescent parents has been laid with the amendment made in March 2021 to the Youth Welfare Support Act, I attempt in this article to discuss the current state and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 parents, analyze the policy support programs that are in place for those young people, and make policy suggestions to provide improved support for adolescent parents.